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056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80	윤영석 의원 등 10인	'24.11.06.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4.12.23.)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9.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16	윤재옥 의원 등 10인	'25.04.18.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9.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최소한도”로, “제57조 및 제60조”를 “제5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5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u>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u>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u>제57조 및 제60조</u>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u>최소한도</u> ----- ----- ----- ----- --- <u>제57조</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u>	<u><삭 제></u>
가. <u>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u>	
<u>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u>	
<u>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u>	
<u>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u>	
<u>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u>	
<u>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u>	
<u>이하 이 호에서 같다)</u>	
<u>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u>	
<u>수평거리의 3배</u>	

<u>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u> <u>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u> <u>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u> <u>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u> <u>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u> <u>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u> <u>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u> <u>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u> <u>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u> <u>배로 한다.</u>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 ① (생 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지 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 다. 1.·2. (생 략) 3. <u>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u> <u>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u>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	--